

## 38. 프랑스(France)

### 1. 근거법 제정 시기

- 최초법 : 1910년(근로자 및 농민연금)
- 현행법 : 1945년(비농업 근로자), 1975년(장애자), 1996년(사회보장 행정), 2001년(피부양 급여), 2003년(연금), 2006(퇴직연금), 2009(장애연금 및 수익활동), 010년(퇴직연금),2012년(재정),2014년(퇴직개혁)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 당연 직역연금 및 사회부조제도
  - ※ 강제보충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됨

### 3. 적용대상

- 당연적용 : 상업과 산업의 근로자, 비농업자영자, 특정 조건하에서의 가정주부
- 임의적용 : 근로활동에 비종사하는 가장(노령연금에 한정), 이전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미가입자, 장애가족을 부양하는 미취업자, 국외 근로중인 프랑스 국적자
- 특별제도 : 광부, 철도, 공익기업, 공공부문 근로자, 선원, 농업 자영자
- 당연직역연금 : 상업과 산업의 근로자, 임금농업근로자, 특정 조건하에서의 가정주부. 특정 직역 연금은 특별사회보험(약간의 예외 존재) 제도 대상자와 유사한 적용범위
- 사회부조 : 프랑스 거주자

### 4. 재원조달

- 가입자
  - 사회보험 : 월 소득의 6.9%(노령 및 특정 유족급여) 및 0.4%(유족수당).
    - 임의 가입자는 고정 소득 구간대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은 없음
    - 노령급여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 €3,311
  - 당연직역연금 : 프로그램에 따라 월소득의 3.1%에서 8.1%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은 없음
    -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월 최대 소득은 사회보험프로그램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월 최대 소득부터 그 금액의 3배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사회보험프로그램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 €3,311
  - 사회부조: 없음

○ 자영자

- 사회보험
  - 무역, 제조, 그리고 공예업에 종사하는 자영자의 경우 자영업 첫 해에는 €1,340(노령)에 €98(장애 및 유족)을 합한 정액 보험료; 두 번째 해에는 €1,328(노령)에 €97(장애 및 유족)을 합한 금액, 이후에는 최대 €39,732까지 연간신고소득의 17.75%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연간 신고소득의 0.6%(노령)와, 최대 €39,732까지 연간 신고소득의 1.3%(장애 및 유족급여)를 합한 금액
  - 자유직종 종사 자영자의 경우, 최대€39,732까지 연간신고소득의 8.23%에 €198,660까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연간 신고소득의 1.87%(노령)를 합한 금액; 장애, 유족급여 보험료는 부문별로 다름
  - 소규모 사업자는 매월 또는 분기별 부문별로 다른 통합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노령, 장애, 유족급여 및 질병, 출산급여, 가족수당의 재원
- 당연직역연금 : 무역, 제조, 그리고 공예업에 종사하는 자영자의 경우 최대 €39,732까지 연간신고소득의 7%에 €158,928까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연간 신고소득의 8%(노령)를 합한 금액. 자유직종 종사 자영자의 보험료는 부문별로 다름
- 사회부조 : 없음

○ 사용자

- 사회보험 : 월 임금액의 8.55%(노령) 및 월 임금총액의 1.9%(유족수당)
  -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월 최저 소득은 없음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 €3,311
  - 사용자의 보험료는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의 1.6배 미만인 소득에 대해 감액. 23세 미만의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는 특정조건하에서 감액
  -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비용의 일부)는 질병 및 출산보험에서 재원 마련
  - €10억 미만의 판매 수입을 가진 회사들은 질병, 임신상태인 특정 자영자들의 노령연금을 위해 0.16%의 사회연대보험료를 부담
- 당연직역연금 : 프로그램에 따라 월소득의 4.65%에서 12.75%
  -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 소득은 없음
  -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월 최대 소득은 사회보험프로그램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월 최대 소득의 1~8배까지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 사회보험프로그램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 €3,311
- 사회부조: 없음

○ 정 부

- 사회보험 : 장기 실업자 및 노동시장으로 재합류되는 특정인의 보험료 납부

- 당연직역연금 : 없음
- 사회부조: 일반 사회공헌금(모든 개인 소득에 부과된 세금) 수입 및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총 비용 지원

##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 ○ 노령연금

#### • 노령연금(사회보험)

- 법정 최저 은퇴연령은 62세. 완전노령연금의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연령은 67세
- 완전연금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가입기간은 가입자의 출생년월에 의해 결정; 1951년 이전 출생자 : 163분기, 1952~1960년 출생자 : 164~167분기. 1973년 이후에 출생한 자는 172분기
-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수령한 후 즉시 새로운 소득활동 종사 가능하나 퇴직 전과 같은 소득활동에 종사하기로 하였다면 6개월 대기기간 필요
- 가입자가 실업급여, 장애연금(66% 이상 장애정도를 판정 받은 경우)을 수급했던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 가입자는 자녀 당 8분기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특정 상황에서는 해당 가입기간 중 4분기를 부친에게 인정할 수 있음)
- 장애자, 일하는 어머니 및 힘들게 일하는 노역자, 장기경력자, 참전용사에게는 특별 수급요건 있음
- 고용은 퇴직시 중단되어야함. 특정상황에서는 연금수급자가 연금 수령하는 즉시 새로운 소득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연금수급자가 퇴직 전 수행한 동일한 소득 활동을 할 경우 6개월을 기다려야함.
- 부분연금 : 가입기간이 1분기 이상이고 완전연금에 필요한 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62세 도달자에게 지급
- 연기연금 : 완전연금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로 있는 경우
- 자녀양육 보조금 : 가입자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한 경우 지급
- 최소 노령연금월액은 가입자의 모든 통합노령연금액(외국연금 포함)이 월 €1,160.04이상이 안될 경우 지급

#### • 노령연금(당연직역연금)

- 사회보험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고용이 중단(약간의 예외 인정)되어야 함
- 부양자녀 수당 : 부양 자녀에게 지급

#### • 노인을 위한 사회연대수당(사회부조, 자산조사)

- 65세인 저소득 연금수급자와 법정최소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근로능력이 없거나 최소 50%의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가입자에게 지급
- 자산조사 : 독신 수급자는 연간 소득이 €9,638.42(부부는 €14,963.65)미만이어야 함

## ○장애연금

### • 장애연금(사회보험)

- 정상적 퇴직연령 미만으로 모든 직업에 대한 소득능력을 66.7% 이상 상실한 자로서 장애발생 이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최종 3개월간 200시간을 포함하여 최종 12개월 동안 600시간 이상 고용된자 ; 또는 최종 6개월간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의 1,015배 이상을 포함하여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의 2,030배 이상의 임금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
-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 €9.88
- 상시간병수당 :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타인의 상기 간호가 필요한 경우 지급
-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60세부터 62세까지 근로할 수 없는 경우 법정최소 퇴직연령시기에 노령연금으로 대체

### • 배우자연금(사회보험, 자산조사)

- 사망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기간이 없음
- 5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배우자(재혼하지 않은 이혼한 전 배우자 포함)에게 지급.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는 사망자와 법적인 동거관계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없음
- 자산조사 : 유족이 미혼인 경우 분기소득이 €5,137.60 미만이어야 함. 소득 조사의 기준점은 매년 1월에 조정됨
- 배우자 연금은 재혼이나 동거시 감액될 수 있음
- 자녀 양육보조금 :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 지급

### • 유족수당(당연직역연금)

- 사망자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기간이 없음
- 5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배우자(재혼하지 않은 이혼한 전 배우자 포함)에게 지급.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는 사망자와 법적인 동거관계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없음. 연금은 두명의 18세(전일 학생, 견습생, 실직하여 관리자 프로그램의 일원일 경우는 21세, 실직하여 임금근로자 프로그램의 일원인 경우는 25세,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 관계없이 지급
- 자녀 양육보조금 : 사망자가 직역노령연금에 따른 자녀양육보조금을 받았거나 수급자격이 있었던 경우. 자녀들은 사망자의 자녀들이어야 함.

### • 배우자 수당(사회보험, 자산조사)

- 사망자가 사망월 이전 12개월중 최소 3개월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
- 가입자 사망 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재혼이나 동거하지 않은 55세 미만

배우자에게 지급

- 자산조사 : 분기당 개인소득이 €2,278.275미만이어야 함
- 사망일시금(사회보험)
  - 사망자가 사망당시 근로활동 중이었거나 실업급여, 현금질병급여 또는 장애연금(66.67% 이상 능력상실 판정받은 경우)을 받았던 경우에 지급

## 6. 급여종류별 지급액

### ○ 노령연금

- 노령연금(사회보험)
  - 가입자 평균 연간 소득의 50% 지급. 1948년 이후 출생자의 평균 연간 소득은 최고소득기간 25년간의 조정된 평균소득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 €3,311
  - 부분연금 : 연금액은 완전 급여에 필요한 가입분기 수 미만 매 가입분기당 1.25%씩 감액. 가입자가 자동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나이(67세)에 은퇴하면 감액없음
  - 최소 부분연금은 가입자 인용소득의 37.5%
  - 연기연금 : 가입자가 완전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분기 수를 초과하는 매 분기당 증가. 증가비율은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다름 (2009년 1월 이후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1.25%)
  - 가입자가 법정 최소 은퇴연령 이후 파트타임으로 계속하여 근로하고 최소 150분기의 가입기간이 있으면 근로시간 수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20~60%가 지급됨. 연금 및 소득활동으로 인한 수입 총액은 가입자의 퇴직 전 최종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1분기 보험료 가입기간이 있는 최소 노령 연금액은 연 €7,615.94
  - 자녀양육 보조금 : 연금액의 10%
- 노령연금 (당연직역연금) : 월 연금은 가입자의 평생연금점수에 퇴직시 연금 점수값을 곱한 금액.
  - 연금 점수값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1.25; 관리자는 €0.43;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통해 일하는 민간 근로자는 €0.47
  - 자녀양육 보조금 : 노령연금의 10%를 임금근로자에게 지급; 관리자 및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통해 일하는 민간 근로자에게는 6%
- 노인을 위한 사회연대수당(사회부조, 자산조사)
  - 노령연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독신자에게 연 €9,998.40, 부부에게 연 €15,522.54을 지급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 ○ 장애연금

### • 장애연금(사회보험)

- 가입자가 어떠한 소득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장애자로 판정되는 경우 가입자 연 평균소득의 50%, 일부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 30% 지급
- 평균소득은 최고 소득인 10년간의 조정된 소득을 기초로 산정됨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 €3,311
- 연간 최저 장애 연금액 : 연 €3,359
- 상시간호수당 : 장애연금의 40%. 최저수당은 월 €1,096.49
-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재개한 경우 연금은 소득조사 없이 6개월간 계속 지급됨. 이후 연금 및 소득의 합계가 장애 발생 전년도에 가입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 중단
- 연금액 조정 :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 • 배우자연금(사회보험, 자산조사)

- 사망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 예정이었던 연금액의 54%. 사망자가 한번 이상 혼인하였다면 연금은 사망자와의 혼인기간에 따라 생존하는 배우자들에게 분할하여 지급
-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60분기 이상인 경우 연 최저연금액은 €3,406.47; 60분기 미만인 경우 비례하여 감액 지급됨
- 연 최대연금액은 €10,426.32
- 자녀보조금 : 배우자연금의 10%. 배우자연금이 자산조사에 따라 감액되면 자녀보조금도 감액됨

### • 배우자연금(당연직역연금)

- 사망자가 받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직역연금의 50%가 임금근로자 및 관리자에게 지급, 공공부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민간근로자들에게는 60%

### • 배우자수당(사회보험, 자산조사)

- 월 €607.54가 2년까지 지급; 배우자가 최소 50세이면 55세까지 연장가능

### • 사망수당(사회보험)

- 사망자의 사망 전 3개월 동안의 일 평균임금의 9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
- 급여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 €3,311
- 최저 일시사망급여는 €370.32, 최대 금액은 €9,258
- 연금액 조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

## 7. 관리운영기관

- 사회연대 건강부(Ministry for Solidarity and Health;(www.solidarites-sante.gouv.fr)와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www.economie.gouv.fr)
  - 전반적 감독 및 법령 공포
  
- 국가노령연금보험(National Old-Age Pension Insurance )
  - www.lassuranceretraite.fr
  - 민간근로자 노령연금 및 유족수당 관리
  -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유근로자 국가노령연금금고
  - (CNSSTT(<https://www.secu-independents.fr>))에서 비농업자영자 노령연금 및 유족수당을 관리
  
- 연방 보충연금 및 퇴직연금협회(<https://www.agirc-arrco.fr>)
  - 민간 임금근로자 및 관리자 직역 연금을 관리
  
- 예금 위탁금고(IRCANTEC)(<https://www.ircantee.retraites.fr>)
  - 공공부분 계약직 민간 근로자 직역연금 관리
  
- 사회보장청 중앙기관(Central Agency of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 www.acoss.fr
  - 통합보험료 징수기관 감독, 보험료 중앙계좌 관리
  
- 통합 보험료징수조합(joint collection agencies)
  - www.urssaf.fr
  - 보험료 및 일반 사회보험료 징수

<2018년 ISSA 자료>